



제 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 >

■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857호)

2025. 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14조의2 신설 등)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예지의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6. 16.

다. 회 부 일 : 2025. 6.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에 따르면, 등록된 장애예술인은 9,528명, 장애예술단체는 233개에 이르고 있음.

그런데 장애예술인들은 연습공간 및 창작공간 부족, 작품발표·전시·공연 등에 필요한 시설부족, 예술활동 관련 지원의 미비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아 활동하고 있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3년마다 재지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 정책추진 및 사업개발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정부 정책을 효율적으로 실행하는 전문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제14조 삭제 및 안 제14조의2 신설).

1.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14조의2 신설 등)

가. 개정안 요지

- 개정안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기존의 전담기관 지정 방식을 폐지하고(제14조제1항 삭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을 법정 법인으로 신설하려는 것임(제14조의2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14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u> <u>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u> <u>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u> <u>1.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u>	<u><삭 제></u>

2.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전담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취소 및 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4조의2(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의 설립) ① 장애예술인의 문
화예술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한국장애인문
화예술원(이하 “예술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예술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예술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 예술원에는 정관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예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
업을 한다.

1.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2. 문화예술 활동의 장애예술
인 참여 확대 지원

3. 장애예술인 고용촉진을 위
한 교육·홍보, 취업알선, 취
업 후 적응지도

4. 장애예술 및 장애예술인 인
식개선운동 지원

5. 장애예술인 창작물 유통활
성화 및 홍보 지원

6.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

	<u>성 개선에 필요한 비용 지원</u> <u>7.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u> <u>8.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교류, 협력 및 연구사업</u> <u>9. 장애예술인 예술활동지원 전문인력 양성</u> <u>10. 그 밖에 예술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u> <u>⑥ 예술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u> <u>⑦ 정부는 예술원의 운영과 제5항 각 호의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
--	--

다. 검토사항

- 현행법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기관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2015년에 설립되어, 전담기관으로 공식 지정되기 이전인 2016년부터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 증진과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2020년 현행법 제정·시행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활동하고 있음. 2021년 3월 2일부터 2024년 3월까지 1차 지정, 2024년 3월 2일부터 2027년 3월 1일까지의 2차 지정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등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2025년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위탁업무 현황]

(단위: 백만 원)

구 분	세부사업	2025년
장애인 예술 역량강화	장애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7,663
	장애예술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1,200
	장애인 창작아카데미 프로그램	2,000
	국제장애예술주간	500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 지원	2,500
	소 계	13,863
장애인 대표 예술단체 활동 지원	장애인문화예술축제	1,060
	스페셜 k-경연대회	200
	장애인합창대회	350
	장애인 문학상, 미술대전	250
	잡지발간	300
	장애인 문화예술대상	150

(단위: 백만 원)

구 분	세부사업	2025년
	전국장애청소년예술제	100
	장애인 국제무용제	650
	장애인 융복합 문화예술 창작 지원	200
	장애예술인 해외공연 지원 및 발굴	150
	전통예술공연	600
	클래식공연	750
	대중예술공연	700
	소 계	5,460
장애예술인 활동 전문공간 운영	장애예술 공연장 운영	4,600
	장애예술 전시장 운영	3,600
	소 계	8,200
장애예술인 예술시장 지원	장애예술 유통 플랫폼 운영 및 지원	500
	소 계	500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지원	인건비	1,794
	운영비	917
	소 계	2,711
전문인력양성 ○ 장애인 예술분야 인력 양성	찾아가는 장애인 문화예술학교	840
	장애인 무용 전문인력 양성	350
	장애인 문화예술 아카데미	200
	시각장애인 연주자 양성	200
	소 계	1,590
문화예술취약분야 육성 ○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	장애인 영상콘텐츠 제작지원	600
	유망 장애인예술가 발굴·공연 지원	200
	장애인문화예술정보시스템 운영	480
	소 계	1,280
합 계		33,604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그런데, 장애예술인들은 여전히 창작 및 연습공간 부족, 작품 발표 기회 제한, 문화시설 접근성 제한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의 역할과 기능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임. 특히, 장애예술인 지원정책이 점차 확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예술인 전담기관 지정 고시」에 따라 지정기간이 3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정책의 일관성과 사업 수행의 연속성 측면에서 제약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현재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을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법정기관으로 명문화하려는 것으로, 전담기관 지정기간(3년)으로 인한 정책 연속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업 추진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높이며, 정부 정책의 일관된 집행과 장기적인 사업 개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임. 이를 통해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고용촉진,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 등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촉진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참고로, 문체부 산하 특수법인 중 법정법인으로 전환된 사례는 다음과 같음.

[문체부 산하 특수법인(법정법인 전환) 현황]

법정기관명	설립 근거	설립연도 / 법정법인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10조	2005 / 2006. 8월
한국문화원연합회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2조	1962 / 2007.12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6조	1997 / 2012. 7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문화예술진흥법」 제38조	1996 / 2012. 8월

법정기관명	설립 근거	설립연도 / 법정법인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기본법」 제11조의2	2002 / 2016. 5월
국악방송	「국악진흥법」 제17조	1999 / 2024. 7월
한국문화정보원	「문화기본법」 제11조의3	2002 / 2025. 3월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동 개정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부수용 입장이나, 기획재정부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 기획재정부는 전담기관은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3년 주기의 전담기관 지정 방식은 그린바이오산업육성 전담기관 등 다수가 있고, 특히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경우 설립 이후 2015년 11억원에서 2020년 156억원, 2025년에는 338억원까지 확대되어, 주기적인 평가 체계 하에서도 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입장임.

○ 한편, (사)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는 장애인 체육계 (대한장애인체육회)와 달리 장애인문화예술의 경우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정기관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장애인문화예술진흥의 핵심 기관으로서 위상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 (사)한국장애인예술인협회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설립된 이후 10년이 넘도록 법정법인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장애예술계에 대한 지원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법적지위 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384

참고 1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개요

- **기관 연혁**(설립근거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2015. 3. 11.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설립
 - 2015. 11. 13. 장애인문화예술센터 '이음' 개관
 - 2021. 3. 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업무 전담기관 지정
 - 2023. 10. 24. 장애예술 공연장 '모두예술극장' 개관
 - 2024. 12. 12. 장애예술 전시장 '모두미술공간' 개관

- **주요 업무**
 - 장애인문화예술센터(이음)의 위탁운영 및 관리
 -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창작·교육·협력 사업
 -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 기타 법인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부대 사업

- **조직 및 인력**
 - 조직 : 5부
 - 임원 : 이사장 1인, 이사 8인(당연직 2인, 비상임 6인), 감사(비상임) 1인
 - 직원현황

구 분	계	이사장	사무국장	1 ~ 3급	4 ~ 5급
정원 / 현원	32 / 32	1 / 1	1 / 1	13 / 9	17 / 21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증감액
합 계	32,112	33,789	1,677
국고보조금 사업 소계	31,927	33,604	1,677
- (일반회계)함께누리 지원	29,057	30,734	1,677
- (국민체육진흥기금) 체육 문화예술사업의 지원	2,870	2,870	-
자체수입 사업 소계	185	185	-
- 자체수입	185	185	-

- **시설현황**

시설명	위 치	시 설	비 고
장애인문화예술센터 이음	서울시 종로구	연습실, 카페, 전시실, 사무공간, 이음아트홀(80석)	국유재산 위탁운영
모두예술극장	서울시 서대문구	중극장(300석 내외), 연습실 등 창작공간, 장애인 편의시설 등	구세군아트홀 임차운영 (‘23.10.24 개관)
모두미술공간	서울시 중구	전시장 2개소, 세미나실 등	서울스퀘어 별관 5층 임차운영 (‘24.12.12 개관)

참고 2

전담기관 지정 관련 규정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상근 전문인력을 5명 이상 보유할 것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실과 기자재를 확보할 것

②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서를 해당 기관에 발급하고,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에 알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업무 전담기관 지정 고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전담기관의 지정 절차) 제3항에 따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업무 전담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4년 3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1. 지정기관 :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2. 지정기간 : 2024년 3월 2일 ~ 2027년 3월 1일(3년)
3.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12